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협의회 설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2조)

나.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산업단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구미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2. 입주기업
3.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 재생사업지구 유관 기관 업무관계자
6. 관계 전문가로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임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 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추진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협의회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전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에 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자문안전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추진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추진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업무소관부서 담당 계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추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①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거나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제안 또는 자문을 듣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4조의18(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의20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9조의20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구미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임직원
4. 해당분야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기술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6.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임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내 용	산출내역	금액(천원)
합 계		10,800
위원수당	100,000원×30명×3회	9,000
여비	60,000원×30명×1회	1,800

※ 수당 : 70,000원(기본) + 30,000원(2시간이상 초과)

※ 여비 : 20,000원(일비) + 20,000원(식비) + 20,000(교통비)

4. 작성자 : 도시과 시설7급 박 효 주

소관 실·과		도 시 과
입 안 자	과 장	최 규 호
	담 당	이 종 우
	담 당 자	박 효 주 (480-5422)